

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. 4. 19 선고 2022가단106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
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대한민국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정담당변호사 이종준

변 론 종 결 2023. 3. 8.

판 결 선 고 2023. 4. 1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단양군 B 504,696㎡ 중 별지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ㄱ의 각 점을
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132㎡에 관하여 2013. 8. 20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
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 모친 C은 1991. 2. 20. 충북 단양군 B 504,696㎡에 인접한 충북 단양군 D 대142㎡ 및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 등을 매수한 이래 위 건물의 부지 등으로 청구 취지 기재 토지 부분(이하 ‘이 사건 분쟁 토지’)을 점유하여 왔고, C이 1993. 8. 19. 사망하여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상속한 이래 이 사건 분쟁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.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쟁토지에 관하여 2013. 8. 20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

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이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,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,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(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다56220 판결 등 참조).

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은 행정재산인 사실이 인정되고, 달리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반증이 없으므로,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점유 개시 여부 및 점유 기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새미

충청북도 단양군 []

임야 504696㎡ 중 132㎡

경용부설
불=4

대지경계선

박크메리터

12.00도

1,000 4,500 6,500 1,000

(가)

경도구역선

측구면적(1,25도조출발-현재)

배치도
S = 1/200

1
A 00

1	2	3	4	5	6	7	8	9	10
1	2	3	4	5	6	7	8	9	10

